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 <編 輯 者 註> ……○

● 第 16 回

商品의 普通名稱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辛 12	79. 7. 24 (還 送)	(第3類) 菓子・糖類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 (性質表示： 效能, 品質)
77抗告(准) 452 (76—5091)	79. 2. 14 (不成立)		

本願商標 :

만나짱

(出願 76—5091)

引用商標 :

있는 點은 否認할 수 없다 하더라도 本願商標를 全體적으로 볼 때 指定商品의 品質만을 表示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記錄을 보아도 當業界에서 “만나짱”이 指定商品의 品質表示로 誤認될 可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成立에 異論이 없는 甲 第3號證(商標公報)에 記載된 本件商標과 指定商品이 同一한 第3類에 만나리·맛순이·맛동산·맛살구 등의 商標가 이미 登錄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이 本願商標를 指定商品의 品質만을 表示한 것으로 본 原審決定은 法理誤解,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8後 11	79. 10. 30 (棄 却)	(第27類) 신발·우산·	商標法 第8條 第1項
77抗告(准) (75—487)	78. 5. 31 (不成立)	지팡이·부채 와 그들의 附屬品	第3號 〔商品의 性質(用途) 表示〕

● 判決內容

本願商標는 조어(造語)로構成된 商品임이 분명하고 “만나”의 고유의 뜻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을 말하나 말음상 飲食物의 맛이 날다는 뜻의 “맛나”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내게 된은 日常 經驗하는 바이며, “만나짱”이라는 商標가 그 指定商品인 菓子 등에 “맛이 있다” 또는 “맛이 좋다”는 品質을 암시 내지 과시하고

本願商標 :

KICKERS

(出願 75—487)

引用商標 :

● 判決內容

本願商標의 뜻은 차는 사람, 특히 차는 버릇이 있는 사람, 공연히反抗하는 사람, 銃鉋의 노리쇠 등의 뜻이 있으나普遍的으로一般人이 쓰고 느끼는 것은 “차는 사람”일 것이며 指定商品中 “신발” 특히 “축구화” 등이 指定商品에 包含되어 있는 本願商標의 경우에는 “축구인”용 또는 “축구”용 등의觀念으로 把握됨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므로 “신발”을 除外한 여타의 指定商品과는 關係없이 “축구화” 등商品에 대한 性質(用途)를 直接적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밟어진다고 判示하고 本願商標가 圖形化되어 있어 商品의 性質을 普通의 方法으로 表示한 것이 아닌 양 主張한 點에 대하여 비록 本願商標가一般的인 印刷體 또는 筆記體의 英文字가 아니고 圖形化한 點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 圖形化의 程度가 너무도 單純하여 普通의 方法의範疇를 벗어난 것이 못된다고 判斷하고 따라서 本願商標를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를適用하여 거절한 原査定에는 違法事由가 없다고 判示하고 있는 바 記錄에 비추어 보니 原審의 위와 같은 사실 認定은 違法하고 거기에 採證法則을 어기거나 審理未盡으로 認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그 評단도 정당하다.

區分 事件番号	判決(審決)日 (結果)	名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8辛 18	79. 12. 11	第49類 織物・毛絹	舊商標法 第5 條 第1項 第6 號
77抗告(절) (73-8905)	(還送) (不成立)	織物 外 4種	[商品의 性質 (品質) 表示]
165 (73-8905)	78. 8. 31	(第50類)	
78辛 21	79. 7. 24	編物・影物・ 印物	
77抗告(절)	(還送)	印物	
164 (73-8906)	78. 8. 31 (不成立)	印物 外 4種	

本願商標 :

SUPER-
WASH

引用商標 :

(出願 73-8906)

● 判決內容

本願商標인 “SUPER-WASH”라는結合된英文字는 前字는 접두어로서 後字는 명사로서 使用되었음이 그 表示에서 명백한 바 本件 證據로 題出된英韓辭典에 의하면 접두어인 “SUPER”는 이상·파도·극도·초월의 뜻이며 명사인 “WASH”는 洗濯·빨래의 뜻임이 뚜렷함으로 이結合된英文을 굳이 풀이하면 “高級洗濯”的 뜻이 되나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본다면 “빨래가 잘되는 것” 또는 “빨래하기 알맞게 特別히 만들어진 것”임을 연상하는 과시, 내지는 암시적인 의도로 명명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 本願商標는 指定商品의 性質을 어느 程度 과시 내지 암시하는 要素가 包含되어 있는 點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記錄에 의하여 보아도 本願商標가一般的으로 指定商品의 性質을 表示하는 뜻에서 使用되었거나 將來 必然으로 使用되리라고 불만한 資料가 없는 本件에 있어서는 本願商標는 자타商品을 식별하는 特別현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原審決이 本願商標를 막바로 指定商品이 빨래하기에 適合한 또는 特別이 만들어진 것임을 직감할 程度로 表現되어 있어商品의 性質만을 表示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商標에 關한 法理를 오해하였거나 그結合된英文字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못한 위法을 범하였다 하겠다. <계속>

(案) 工業所有權 相談室 운영 (内)

- 相談日時 : 每日 10:00~16:00
(土曜일은 10:00~12:00)
- 相談料 : 無料
- 相談依頼者 : 本會 會員企業(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
- 相談分野 및 範圍
 - 1) 出願・異議申請・登録節次 및 要領
 - 2) 工業所有權紛爭의豫防 및 事後處理
 - 3) 社內 特許管理要領・職務發明補償制度 運用方案

- 4)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
- 5)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
- 6) 其他 工業所有權에 關한 諸般事項

● 結果處理

- 1)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回答
- 2)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開可能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
- 相談處 :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查資料部
(557-1077~8, 568-8263 · 8267)